

한국은행 제주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2024. 3. 28. 전부개정
5. 16. 개정
12. 27. 개정
2025. 6. 20.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이하 “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이하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제주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 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후심사 자료제출)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금원장(사본)
2. 사업자등록증(명)(사본)
3. 금리산출표(사본)
4.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5. 그 밖에 지원대상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별도로 요청하는 자료

제4조(평가관리 기준)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금융기관의 금리 감면폭(30%)
2. 절차 제7조에 따른 제재 빈도(20%)
3. 절차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한 준수 여부(20%)
4. 제출자료의 정확성(20%)
5. 업무 협조도(10%)

제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3.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4. 5. 16.>

이 기준은 202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5. 6. 20.>

이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¹⁾²⁾

지원대상 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A1	창업기업	일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영업개시 후 3년 이내인 기업
A2	벤처기업	일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 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
A3	혁신기업	일반	① 다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사업목적과 관련있는 특허 - ISO인증 - 정부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정 또는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②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A4	녹색기업	전략	① 다음 인증을 받은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EDP) 인증제품 생산 중소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획득한 설비 제조업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제품 생산기업 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단, 태양력발전업체(KSIC 35114)는 제외)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KSIC 37~39) - 에너지저장장치 및 이차전지 제조업체(KSIC 28113, 28202, 28209)
A6	추천기업 ³⁾	일반	-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테크노파크가 추천하는 우수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A7	지역특화 산업 영위기업	일반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JQ)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다음의 관광업체로 동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등록, 허가 또는 신고, 지정된 업체 o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단,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에 한함) - 자동차대여사업체(KSIC 76110)
A8	지역전략 산업영위 기업	전략	- '지능형 관광서비스' 관련 업체로서 <별표 1-1>에 해당하는 업체 - '청정바이오' 관련 업체로서 <별표 1-1>에 해당하는 업체 - '그린에너지 솔루션' 관련 업체로서 <별표 1-1>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대상 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A9	전입기업	일반	- 타지역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이전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A10	수출관련 기업	일반	- 수출비중이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최근 연도기준)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의 '수출유망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일반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전략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어업자·농어업법인 포함)
A14	명절·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⁴⁾	일반	- 계절적 자금 수요, 재해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지원하는 기업
A15	기타 지원기업 ⁴⁾	일반	-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통한 상담결과 또는 지역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A16	경기부진·경기민감 업종영위 기업	특별	-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등 규모기준에 따른 소기업 ① 업종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KSIC 55~56) ○ 도매 및 소매업(KSIC 45~47) (단, 대형종합소매업(4711), 담배소매업(47232), 연료소매업(477), 약국(47811) 제외)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KSIC 752) ○ 운수 및 창고업(KSIC 49~52) ② 매출액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80억원 이하 * 매출액은 직전 12개월을 영업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창업 등으로 12개월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연환산한 매출액을 따름

- 주: 1)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된 업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름
2)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3)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제주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 해당 업종

산 업	KSIC 코드 (제11차)	업 종	
지능형 관광서비스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90191	공연 기획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청정바이오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42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5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5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01		떡류 제조업	
10602		빵류 제조업	
1060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82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83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산 업	KSIC 코드 (제11차)	업 종
청정바이오	1083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83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01	도시락류 제조업
	1070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892	차류 가공업
	108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8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8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8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301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그린에너지 솔루션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20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35115	풍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42209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42311	일반 전기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492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71600	기타 전문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별표2>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1차)
전문 소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5621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행정업	846 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업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86 보건업
오락 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주: 1)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된 업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름